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옥성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구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.
- 나. 구미시민(주민등록상)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우선예약제를 통하여 산림휴양 기회 확대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다.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을 참조하여 위약금 처리기준 변경 및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산림문화휴양관 구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확대 및 사용시간 조정(안 제4조, 별표 1)
- 나. 구미시민(주민등록상)에게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(20%)과 일부 시설(숲속의 집 5개동)에 대한 우선예약제 적용(안 제4조의2, 별표 1, 별표 1의2)
- 다. 야영테크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징수방법 등 조정(안 제4조의2)
- 라.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을 참조,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위약금 등의 처리기준 적용(안 별표 2 및 별표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불임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불임)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성수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“비수기”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.

가. 매년 7월 및 8월

나. 금요일 또는 토요일

다. 공휴일의 전날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.

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,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,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.

- ②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

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사용 전날까지 낼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숲속의 집 5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4조의3(시설의 사용시간)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
1. 숲속의 집 · 산림문화휴양관 :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
2.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: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
3.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3월부터 10월까지 : 그날 8시부터 19시까지

나.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: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설사용료 등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차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시설사용료의 면제)”를 “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(중전의 제2항)제12호 중 “숲속의 집”을 “숲속의 집·산림문화 휴양관”으로, “1동당”을 “1동(실)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”을 “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”로, “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 기준」에 의거 별표2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의거 별표 3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

별표 1 중 숲속의 집 사용료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예약하는 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기존 예약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예약된
건의 위약금 및 배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(제4조 관련)

□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

구분	규모	사용기간	일반 사용자	
			성수기	비수기
숲속의 집	19㎡(2명)	1동/1일	50,000원	35,000원
	27㎡(4명)	1동/1일	70,000원	49,000원
	39㎡(6명)	1동/1일	90,000원	63,000원
	46㎡(8명)	1동/1일	110,000원	77,000원
산림문화 휴양관	17㎡(2명)	1실/1일	45,000원	31,500원
	26㎡(4명)	1실/1일	70,000원	49,000원
	45㎡(8명)	1실/1일	110,000원	77,000원
	80㎡(12명)	1실/1일	150,000원	105,000원

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율(제6조 관련)

대상기간 감면대상	성수기	비수기	감면기준
1. 구미시민	20%	40%	※일반사용자의 성수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감면율임.
2. 구미시승마장 월회원	30%	60%	
※비고			
- 구미시민 및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의 중복할인은 되지 않는다.			
- 구미시민에 대한 감면인 경우 구미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			

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(제7조 관련)

구분	해지유형	처리기준
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	1) 성수기 주중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•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급
	2) 성수기 주말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•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
	3) 비수기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	• 계약금 환급 •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 •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※ 비고 1.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사용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. 2. 성수기란 다음과 같으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임. 가. 매년 7월 및 8월 나. 금요일 또는 토요일 다. 공휴일의 전날		

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(제8조 관련)

구분	해지유형	처리기준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	1) 성수기 주중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 • 손해배상
	2) 성수기 주말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 배상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 배상 • 손해배상
	3) 비수기의 경우 •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• 계약금 환급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 •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※ 비고 1. 성수기란 다음과 같으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임. 가. 매년 7월 및 8월 나. 금요일 또는 토요일 다. 공휴일의 전날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성수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“비수기”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. 가. 매년 7월 및 8월 나. 금요일 또는 토요일 다. 공휴일의 전날
제4조(시설사용료) ①·② (생략) ③ <u>숲속의 집 사용료는 비수기(매년 7~8월과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기간)에는 30%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</u> ④ <u>숲속의 집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.</u> ⑤ <u>숲속의 집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</u>	제4조(시설사용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.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

여야 하며,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.

1. 숲속의 집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5:00부터 퇴실일 13:00까지로 한다.

2.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:00부터 익일 13:00까지로 한다.

3.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당일 08:00부터 19:00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당일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,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

<신 설>

전달부터,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.

②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사용 전날까지 낼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숲속의 집 5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4조의3(시설의 사용시간)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
1.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:
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

제5조(요금 징수 및 게시) ① 시설 사용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. ② (생 략) 제6조(시설사용료의 면제) ① (생 략) <신 설> ②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호에 해당하는	12시까지 2.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: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3.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 과 같다. 가. 3월부터 10월까지 :그날 8시부터 19시까지 나.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: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(요금 징수 및 게시) ① 시설 사용료 등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차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 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경우는 연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숲속의 집 사용자 : 1동당 차량 2대

13. (생략)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의거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배상처리)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환자
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
-- 1동(실)당 -----

1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-----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-----
----- 별표 2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배상처리) ① -----

--- 별표 3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입장제한) -----

-----.

1. 감염병 ---

2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)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개정 2008.2.29, 2010.3.17]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조(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 생략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9.17]

□ 「소비자 기본법」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□ 소비자분쟁 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-10호, 2011.12.28.시행)

○ 성수기 주중의 경우

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1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3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5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: 총 요금의 80%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손해배상

○ 성수기 주말의 경우

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2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4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60%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손해배상

○ 비수기의 경우

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: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%배상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제정수반요인

구미시민(주민등록상)의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위해 성수기에는 20%, 비수기에는 40% 할인함에 따라 세입의 감소가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구미시민의 이용율은 54%(3년간 평균) 정도로 구미시민 감면을 받을시 수입이 감소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산출내역 : 256백만원(3년간 휴양림 평균수입) × 54%(구미시민 이용율) × 20%(감면율) = 27.6백만원

4. 작성자

산림경영과 산지개발계장 장지욱 (☎480-5881)

산림경영과 녹지8급 황민아 (☎480-5883)